보험의 모든 것

글 · 최진만 부회장 (주)비투비인터넷

<목 차>

1. 보험
2. 보험가액
3. 보험계약
4. 보험계약자
5. 보험금
6. 보험금액
7. 보험기간
8. 보험료
9. 보험료 불가분의 원칙
10. 보험사고
11. 보험수익자
12. 보험위부
13. 보험자
14. 보험증권

1. 보험(保險)

보험(insurance)이란 사망 · 화재 · 사고 등 뜻하지 않은 사고에 대비하여, 미리 일정한 보험료를 내게 하고,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일정한 보험금을 주어 그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이다.

동종의 경제상의 위험하에 있는 다수인이 일정한 우연의 사고발생에 의하여 생기는 경제상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생긴 것이다. 개연율(蓋然率)에 따라서 산출된 일정비율의 출원으로서 공동준비재산을 구성하여, 현실적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자의 경제상의 수요를 충족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보험의 형태는 극히 다기다양하며 여러 가지 표준에 의거하여 분류되지만 주요한 것으로서 공보험과 사보험, 영리보험과 상호보험, 물건보험(재산보험)과 인신보험, 손해보험과 인보험, 해상보험과 육상보험, 원보험과 재보험, 개별보험과 집합보험, 기업보험과 가계보험이 있다.

이 밖에도 특별보험 · 총괄보험 · 단순보험 · 혼합보험 · 전부보험 · 일부보험 · 초과보험 등이 있다. 보험 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행정감독은 보험업법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또 상법의 보험편은 손해보험(화재보험 · 해상보험 · 운송보험 · 책임보험)과 인보험(생명보험 · 상해보험)

의 보험계약관계를 규제하고 있다.

2. 보험가액(保險價額)

피보험이익의 가액으로서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자의 보상책임의 최대한의 표준이다. 보험금액은 보험가액의 한도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양자의 관계에서 일부보험·전부보험·초과보험·중복보험 등의 문제가 일어난다.

보험가액의 평가에 관하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미평가보험)에는 그 협정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그 구속력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미평가보험)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에 의하여 하고 있다. 그리고 운송보험이나 해상보험의 경우에는 평가가 용이한 발송의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도록 법정(法定)하였다. 이것을 '보험가액불변경주의' 라고 칭한다.

3. 보험계약(保險契約)

보험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상법은 보험계약을 당사자의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피보험자의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보험계약은 보험료의 지급에 대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액을 지급한다는 '위험부담' 의 급여를 대가로 삼으므로 유상·쌍무의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보험계약은 보험약관에 따라서 체결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른바 부합계약성이 강하며, 계약의 성립은 양당사자의 합의로 되지만(낙성계약), 실제로는 약관에 의하여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므로, 이른바 요물계약과 같은 결과로 된다. 보험계약은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만 상행위가 된다.

부합(附合)은 소유자가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물건이 결합하여 물리적, 사회경제적으로 보아 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일이다.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된다. 그리고 요물계약(要物契約)은 당사자끼리의 합의 뿐만 아니라 목적물의 인도와 다른 급부(給付)까지도 효력발생의 요건이 되는 계약으로, 낙성(諾成)계약과 대비된다.

4. 보험계약자(保險契約者)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보험자의 상대방이 되어 자기의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지급의 의무를 진 자를 말한다. 보험계약자는 이 의무를 주요한 의무로 하는 외에 고지의무,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위험의 변경·증가의 통지의무, 손해방지의무, 설명의무(보통보험약관) 등을 부담한다.

또 보험증권의 교부·재교부청구권, 특별위험의 소멸 또는 초과보험 등의 경우의 보험료의 감액청구권,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보험료반환청구권, 임의해지권, 보험적립금반환청구권 등이 있다.

보험계약자로서는 이상의 권리가 있을 뿐, 보험금액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권리는 없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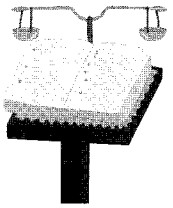

러나 보험자에 대하여 손해보험의 피보험자 또는 인보험의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는 있다.

5. 보험금(保險金)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자가 현실로 보험의 수익자(손해보험의 피보험자, 인보험의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다. 생명보험의 경우와 같은 정액보험에 있어서는 계약에서 협정된 보험금액대로 지급되므로 보험금이 보험금액과 일치하지만 일반손해보험과 같은 부정액보험에 있어서는 보험금액의 범위 안에서 실제로 생긴 손해액을 지급하므로 양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6. 보험금액(保險金額)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의 최대한도로서 보험계약자의 급여인 보험료의 지급에 대한 보험자의 반대급여이다. 그 금액의 결정은 계약당사자의 협정에 의하며,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보험가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손해보험은 현실로 생긴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급여의 종류는 금전급여가 원칙이므로 이를 보험금액이라고 부르지만, 현물 또는 역무 등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구별할 것은 보험금, 즉 사고발생시에 보험자가 현실로 급여하는 금전인바, 생명보험과 같은 정액보험의 경우에는 양자가 일치하지만 손해보험과 같은 부정액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현실로 생긴 손해액이 보험금으로 된다.

7. 보험기간(保險期間)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고 종료되는 기간을 말한다. 즉 그 기간 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보험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기간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상법 제688조, 제699조, 제700조에 명기되어 있다.

8. 보험료(保險料)

보험자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보수로서, 보험자의 보험금액의 급여에 대한 반대급여이다. 이것을 영업보험료라고도 하며, 보험사고 발생의 확률에 따라서 순리적으로 산출되는 이른바 순보험료 또는 총보험료에 부가보험료(이익·보험사업경영비 또는 보험계약체결비용 등)를 가산한 것이다.

보험료의 산출은 보험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위험율에 따라서 보험료기간을 단위로 하여 정하여진다. 보험료 지급방법으로서는 손해보험과 같이 전납하는 경우와 생명보험과 같이 각 보험료기간으로 분납하는 경우가 있다. 분납하는 경우에는 매년 평균한 일정액, 즉 평균보험료를 납입함이 원칙이다.

특정한 경우에는(예 : 특별위험의 소멸 등)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이 무효인 일정한 경우에는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인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적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9. 보험료불가분(保險料不可分)의 원칙(原則)

한 보험료기간의 보험료는 불가분이라고 하는 원칙이 있다. 이것은 그 기간내의 위험을 불가분적으로 보는 관계상 그 기간내의 보험료가 불가분의 성질을 갖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간의 중도에서 계약의 실효 또는 해지가 있는 경우에 이미 보험료가 지급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보허료기간의 전기간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미경과(未經過) 보험료의 반환만을 청구할 수 있다.

10. 보험사고(保險事故)

보험자의 보상의무를 구체화시키는 사고, 즉 보험이 붙여진 우연한 사고를 말한다. '위험, 즉 보험사고가 없으면 보험이 없다' 는 표어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에 불가결한 요소인 것을 표시한다. 보험사고의 요건으로서는 우연성, 즉 불확정인 것이어야 한다. 우연성은 계약 당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함을 요하지만 당사자 등에 있어서 주관적으로 불확정인 때에는 이를 유효로 하였다. 그 외의 요건으로서 가입자측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고, 비상적·불법적·자연적이 아닌 것이라야 한다. 왜냐하면 이는 보험사고의 우연의 정도는 보험료 산정의 기초로서 보통 기대할 만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11. 보험수익자(保險受益者)

인보험계약에서 보험금액의 지급을 받을자로 지정된 자이다. 보험계약의 수익자라는 의미에서 손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 해당한다. 손해보험계약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의 수익자를 겸하지만 인보험계약에서는 피보험자 외에 보험이 수익자인 이른바 보험수익자의 지위가 따로 있어서 양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가 있다.

이는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동시에 보험의 수익자가 됨이 일반적임에 대하여, 인보험의 전형인 사망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유족인 제3자가 보험의 수익자로 되어 온 전통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를 겸하지 아니한 경우를 '타인을 위한 보험', 이를 겸한 경우를 '자기를 위한 보험' 이라고 한다. 타인을 위한 인보험계약에서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수익자를 임의로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보험금액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는 중요한 보험관계자이다. 따라서 보험의 선의계약성에 비추어 통지의무와 설명의무(보통보험약관)가 있다.

12. 보험위부(保險委付)

해상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이 전부 멸실한 것과 동일시할 일정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의 청구를 하기 위하여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가지는 모든 권리를 보험자에게 위부하여 보험금액의 전부를 청구하는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다. 보험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고 피보험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의하여 법적 효과를 일으키므로 형성권의 일종이지만, 행위의 본질을 둘러싸고 학설이 나누어져 있다.

위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①선박이 침몰된 때, ②선박의 행방이 불명한 때, ③선박이 수선할 수 없게 된 때, ④선박 또는 적하(積荷)가 포획된 때, ⑤선박 또는 적하가 관공서에 압수되어 6월 이상 환부되지 아니한 때이다. 위부를 하려면 일정한 기간내에 보험자에 대하여 통지를 발하여야 하며, 또 그 위부는 무조건이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보험목적의 전부에 관하여 행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형성권(形成權:Gestaltungsrecht)이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권리를 말한다. 또 위부(abandonment)는 자기의 소유물 또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주어서 자기와 상대방 사이에 있는 법률 관계를 소멸시키는 일이다.

13. 보험자(保險者)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지급을 할 의무를 진 자이다. 그 자격은 일정액 이상의 자본금을 가진 주식회사에 한하고, 그 영업은 면허를 요한다. 또 그 상호 중에 주로 영위하는 보험사업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하며, 보험회사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보험사업자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상호보험의 보험자는 일정액 이상의 기금을 가진 상호회사로서 면허를 요하며, 보험업법에 의하여 감독을 받는다. 사회보험에서도 보험을 인수하는 자를 보험자라고 한다. 보험자는 주요한 의무자로서 상기한 보험금액지급의무가 있다.

그외에 보험증권교부의무, 보험증권재교부의무, 일정한 경우의 보험료 반환의무, 생명보험의 경우의 적립금반환의무 등이 있다. 동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은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지급의무를 비롯하여 각종의 통지의무·손해방지의무 내지 고지의무 등이 있다.

14. 보험증권(保險證券)

보험계약이 성립된 후에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자가 발행하는 증권이다. 보험계약자를 위하여는 보험계약에 관한 증거증권이 되는 동시에 보험자를 위하여는 보험증권의 소지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그 책임을 면하게 되므로 면책증권이라고 할 수 있다.

기재사항은 법정되어 있으나 그중 어느 것을 결하여도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상대적 요식증권이기 때문이다. 보험증권의 기재내용이 계약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그 정부(正否)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으나 보험관계의 안정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다만 이 기간은 1월 이하로 하지 못한다)내에 한하여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하는, 이른바 이의약관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다. 인보험은 물론, 손해보험에도 보험증권은 기명식으로 발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근래 해상보험이나 운송보험에 있어서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발행되어서 배서·교부되는 보험증권의 성질에 관하여 종래의 통설은 그 무인성(無因性)과 문언성을 부인하여 그 유가증권성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교체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실제의 경제사회의 수요에 응하여 유가증권성을 인정할 것이라는 설이 유력하다.